

# 임원 선출 규정

2011년 8월 26일 제정  
2011년 12월 7일 개정  
2014년 10월 30일 개정  
2018년 10월 24일 개정  
2020년 10월 29일 개정  
2023년 10월 26일 개정  
2024년 10월 29일 개정

제1조 (목적) 한국우주과학회 정관 제12조 1항에 따라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권)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지 만 1년이 경과된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3조 (임원 자격)

- ① 회장은 최근 10년간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사로 봉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 ② 이사는 최근 5년간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 ③ 감사는 10년간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4조 (회장후보 선출)

- ① 회장 후보는 선거권자 온라인 추천 투표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제①항을 충족하는 복수의 후보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최대 2명의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회장 후보를 총회 개최 최소 1주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회장 후보 선출 온라인 추천 투표에서 선거권자 1인은 1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⑤ 회장 후보 선출 온라인 추천 투표는 임원선출 정기 총회 개최 30일 전에 실시하고 그 기간은 2주로 한다.

제5조 (회장 선출)

- ① 회장은 총회에서 회장 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선거권자의 무기명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②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차기회장으로 한다.

제6조 (부회장 선출)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7조 (이사선출)

- ① 전체 이사 수의 1/2을 선거권자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며, 나머지 1/2은 차기 회장이 지명한다. 단, 비등기 이사로 협동이사 및 실무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한다.
- ② 이사 선출 온라인 투표는 선거권자 1인이 3명을 추천한다.
- ③ 투표 결과 상위 다득점자로 수락 여부를 거쳐 이사의 1/2을 확정한다.
- ④ 선출된 이사 중에서 총회 당일 회장 또는 감사로 선출되어 결원이 생긴 경우 차득점 순으로 수락 여부를 거쳐 이사로 확정한다.
- ⑤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위원장, 포상위원장, 학술대회준비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⑥ 각 분과에서 선출된 분과위원장은 제3조 ②항의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8조 (감사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9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규정 개폐)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